##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41 발의연월일: 2025. 2. 13.

발 의 자: 박용갑・박정현・정을호

소병훈 • 이병진 • 권칠승

한민수 · 박상혁 · 강유정

서미화・황 희・조인철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앓던 40대 여교사가 오후 4 시 30분경 돌봄수업이 끝나고 이동하던 8세 여아를 '책을 주겠다'는 이유로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2018년부터 우울증치료를 받아왔으며, 2024년 12월 9일 우울증으로 인하여 질병 휴직을신청했으나, 휴직 21일 만에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규칙에 따라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2024년 12월 30일 복직했으며, 복직한 후 불과 40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신체상·정신상의 장애와 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환교원에 대해 직무수행 가능 여부와 복직 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질환교원의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4조제1항제1호의2, 제45조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신체검사)"를 "(신체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교육감은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이하 "질환교원"이라 한다)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지방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한다.
- 1. 제44조제1항제1호에 의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
-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 한 교원
- 3.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
- ③ 지방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④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방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방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제45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제7호의3"을 "제1호의2, 제7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유로 인하여 휴직한 질환교 원은 복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방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환교원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1호의2,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신체검사) (생 략)	제16조(신체검사 등)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교육감은 제4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신체상ㆍ정신상의 장
	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
	적ㆍ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이하 "질환
	교원"이라 한다)에 대한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
	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지방질
	환교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
	영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제1호에 의한 신
	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
	항제4호에 의한 신분상 조치
	가 필요한 교원
	3.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58조제1
	항제1호에 따라 신분상 조치
	가 필요한 교원

<신 설>

<신 설>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 지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하고, 제7호의2 및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한다.
1. (생략)

<u><신 설></u>

- 2. ~ 12. (생 략)
- ② ~ ⑤ (생 략)

③ 지방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
<u>다.</u>
④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방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44조(휴직) ①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방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장기적・지속적으로 정
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
다고 판단한 경우
2.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 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의3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2. ~ 11. (생 략)
  - ②・③ (생략)

<신 설>

45조(휴직기간 등) ①
 1 <u>제1호</u> 의2, 제7호의3
,
2. ~ 11.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
의2의 사유로 인하여 휴직한
질환교원은 복직하려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
조제2항에 따른 지방질환교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u>한다.</u>